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253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9월 6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1137)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, 본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그 내용을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의안번호 1137은 국가를 위해 헌신·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2023년 2월 「정부조직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23년 6월부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바 있음. 이러한 정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용어 정비 (안 제2조)
-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(안 제5조 제2항)
- 용어 정비 및 조례의 기존 개정사항 반영(안 제5조제1항, 제6조제1호 및 제2호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국가보훈처”를 “국가보훈부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0만원”을 “15만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말소, 타 시·도”를 “주민등록이 말소, 타 시·도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참전유공자”란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, 법 제5조에 따라 <u>국가보훈처</u>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가보훈부</u>----- -----.</p>
<p>제5조(참전명예수당)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<u>범위</u> 내에서 참전명예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수당 지급액은 월 <u>10만원</u>으로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5조(참전명예수당) ① ----- ----- -----<u>범위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15만원</u>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수당의 지급중단) 시장은 수당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.</p> <p>1. 사망 또는 「주민등록법」에</p>	<p>제6조(수당의 지급중단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따라 <u>말소, 타 시·도</u> 전출한 경우</p> <p><u>2. 수당 지원대상자가 제3조제1 호 및 제2호 해당자로 자격 변 동이 확인 된 경우</u></p>	<p><u>주민등록이 말소, 타 시·도</u> <u>로 -----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